2023년 스타트업 파트너 연계 육성 지원 창업기업 모집 공교수정

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대·중·소기업과의 협업 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「2023년 스타트업 파트 너 연계 육성 지원」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3월 14일 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

I 모집개요

□ 사업목적

이 대·중·소기업과 협업하여 기업 간 애로사항 해결과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신규 창업 아이디어 발굴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

□ 모집대상

- ① 창업기업 : 창업 7년 이내 기업 (16. 3. 13. 이후)
 - 스타트업 : 특화분야 및 4차산업 관련 분야 도입, 신규아이템, 제품 개선, 시장 진출 등을 희망하는 기업
- ② 파트너사 : 창업 5년 이상 기업 (18. 3. 14. 이전)
 - 파트너사 : 창업기업 과제를 협업·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〈공동프로젝트 분야〉

| 연번 | 구분 | 신청대상 | | |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1 | 파트너 프로젝트 센터의 파트너 기업 매칭을 희망하는 창업기업 파트너사 | | | | |
| ' | 퍼트니 <u>=</u> 도국= | *센터에서 매칭 | | | |
| 2 | 지요청 ㅠ그제ㄷ | 사업아이템의 고도화 및 공동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| | | |
| 2 | 자율형 프로젝트 | 창업기업·파트너사 매칭을 완료한 기업 | | | |

- □ 모집 및 공고기간 : 2023년 3월 14일(화) ~ 4월 14일(금) 12:00 까지
- □ 지원내용
 - ㅇ 공동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(시제품 제작, 마케팅 등) 최대 40,000천원 지원
 - ㅇ 기업 역량 강화 교육 및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지원

Ⅱ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□ 신청자격

① 창업기업 : 창업 7년 이내 기업 (16. 3. 13. 이후)

- 창업기업 : 특화분야 및 4차산업 관련 분야 도입, 신규아이템, 제품

개선, 시장 진출 등을 희망하는 기업

② 파트너사 : 창업 5년 이상 기업 (18. 3. 14. 이전)

- 파트너사 : 창업기업 과제를 협업·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

〈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(재창업기업 포함)의 대표자〉

- □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 - *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'개업연월일',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 - ** 다수의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,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창업일 기준
- ☞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 ②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 - * 공동·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 제출

〈신청 제외대상〉

- ①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
-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 - * 단,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·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,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은 신청 가능
-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 - * 단,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자, 국세·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 등은 신청 가능
- ④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(기업)
- ⑤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- ⑥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Ⅲ 지원내용

□ 지원내용

ㅇ 공동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

- 지원 기간 : 협약일 ~ 2023년 10월 31일

- 지원 규모 : 총 4개사 내외

- 사업화 자금 : 비즈니스모델링(BM), 시제품 제작비용, 제품 및 디자인 개선, 기술정보 및 마케팅 비용 등의 사업화 자금 최대 40,000천원 지원*

| 금액 | 개사 | 총액 |
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40,000,000 | 1개사 | |
| 35,000,000 | 1개사 | 총 132,000,000 |
| 30,000,000 | 1개사 | - 132,000,000 |
| 27,000,000 | 1개사 | |

*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배정 및 협약체결

** 사업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해당

< 지원항목 >

| 분야 | 분야 | 지원 세부사항 | | | |
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| 시제품 제작비 | 자체 제작이 불가한 경우 외부 전문 업체 의뢰비 등 | | | |
| 니어취 | 제품 및 디자인 개선 | 기존 제품 성능 및 디자인 개선 등 | | | |
| 사업화 지원 | 지재권 취득비 | 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비용 | | | |
| 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 | 재료비 | 재료·원료 구입비 | | | |
| | 마케팅비 | 홈페이지, 홍보영상, 제품 카탈로그 제작 등 | | | |
| | | 사업모델 개발, 개선 및 공동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| | | |
| 운영비 | 컨설팅, 멘토링비 | 스타트업과 파트너 기업 간의 멘토링 및 컨설팅 | | | |
| 프아 | | *10,000천원 한도 | | | |
| | 회계정산비 | 회계 정산 수수료 등 사업 정산 비용 (40만원) | | | |

- 사업비 구성 : 지원금의 30% 창업기업 대응자금 자부담(현금 10%, 현물 20%)

- 현물 인정 기준 : 인건비(대표 및 고용인력), 보유 기자재(취득가액의 10%),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

<사업비 구성 예시>

| 총 사업비 | 지원금 | 창업기업 자부담 | |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
| 등 시합미 | 시전급 | 현금 | 현 물 | |
| 5,200만원 | 4,000만원 | 400만원 | 800만원 | |
| 5,200 한 전 | 100% | 10% | 20% | |

ㅇ 기업 역량 강화 교육 & 멘토링

- 일 정 : 2023년 5월 ~ 10월 중

- 교육 지원 : 세무/회계, 인사/노무, 투자 등 창업기업 관심분야

| 일반 창업 교육 | | 역량 강화 교육 | | 기업 심화 교육 |
|---|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인사/노무, 투자:세무/호계 등창업기초 역량강화 | ⇒ | ○ 효율적 조직구성/관리 ○ 원가관리와 경영설계 ○ 투자유치 전략 | ⇒ | ○ 경영전략 및 분석 ○ 투자유치 실전과 IR |
| 임직원 대상 | | 대표 및 임직원 대상 | | 대표 및 임직원 대상 |

- 멘토링 지원 : 창업기업 1:1 분야별 멘토링 지원 및 네트워킹 등

| 멘토링 수요조사 | | 전문가 섭외 | | 기업 심화 교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 인사/노무/투자/세무/회계 등 ○ 기업 멘토링 수요조사 | ⇒ | ○ 노무사, 세무사, 변리사 등 | ⇒ | ○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○ 기업의 비전 제시 |

Ⅳ 신청 및 접수

□ 파트너사 신청접수

- o 파트너사 신청기간 : 2023년 3월 14일(화) ~ **3월 28일(화) 12:00**
- ※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<u>신청 마감일 2~3일 이전에</u> <u>'온라인 신청'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(</u>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, 마감시간 이후 불가)
- o 접 수 처 :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신청 플랫폼(http://event.jbci.or.kr)
- 사업문의 : 성장육성팀 ☎ (063) 220-8916, rightstar@ccei.kr
- ㅇ 신청방법 : 신청서 및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
 - 신청 시, 해당하는 지원 분야 1개 선택

| 연번 | 구분 | 신청대상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1 | 1 파트너 프로젝트 센터의 파트너 기업 매칭을 희망하는 창업기업교 | | | | |
| l I | 파트니 프도젝트 | *센터에서 창업기업·파트너사 매칭 | | | |
| 2 | 지으청 ㅠㄹ제ㅌ | 사업아이템의 고도화 및 공동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| | | |
| 2 | 자율형 프로젝트 | 창업기업·파트너사 매칭을 완료한 기업 | | | |

< 온라인 신청절차 >

- ① 온라인 신청 페이지 접속 \rightarrow ② '사업신청' 메뉴 선택 \rightarrow ③ **스타트업 파트너 연계 육성** '신청하기' 선택 \rightarrow
- ④ 기본정보 입력(특수문자 입력 시 제출 불가) → ⑤ **신청서 업로드(용량제한 30MB 유의, 파일형식 PDF)**
- \rightarrow ⑥ '온라인 접수' 제출 \rightarrow ⑦ '신청·접수확인' 메뉴 선택 \rightarrow ⑧ 신청정보 (신청사업명, 이름, 휴대전화, 비밀번호) 입력 \rightarrow ⑨ '접수현황확인'

〈파트너사 준비 및 제출서류 목록〉

| 구분 | | 제출서류 | 필수여부 | 비고 |
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
| 1 | ■신청서 | | 필수 | 1부 |
| 2 | ■개인정 | 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| 필수 | 1부 |
| 구분 | | 증빙서류 | 필수여부 | 비고 |
| 1 | ■개인 | 사업자등록증 | 필수 | |
| ' | ■ 법인 |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| 2T | - |
| 2 | ■실적지 | ·료(매출, 수출, 투자, 고용 등) | 선정 후 제출 | 해당자 |
| 3 | ■기타지 | 료(지식재산권, 벤처기업확인서 등) | 선정 후 제출 | 해당자 |

□ 창업기업(스타트업)신청접수

- 창업기업(스타트업) 신청기간 : 2023년 3월 31일(금) ~ 4월 14일(금) 12:00
 - ※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<u>신청 마감일 2~3일 이전에 '온라인 신청'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(</u>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, 마감시간 이후 불가)

o 접 수 처 :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신청 플랫폼(http://event.jbci.or.kr)

○ 사업문의 : 성장육성팀 ☎ (063) 220-8916, rightstar@ccei.kr

ㅇ 신청방법 : 신청서 및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

- 신청 시, 해당하는 지원 분야 1개 선택

| 연번 | 구분 | 신청대상 | | | |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
| 1 | 파트너 프로젝트 | 센터의 파트너 기업 매칭을 희망하는 창업기업파트너사기업 | | | | |
| l | | *센터에서 창업기업·파트너사 매칭 | | | | |
| 2 | 지으청 ㅠㄹ제ㅌ | 사업아이템의 고도화 및 공동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| | | | |
| | 자율형 프로젝트 | 스타트업 · 파트너사 매칭을 완료한 기업 | | | | |

< 온라인 신청절차 >

① 온라인 신청 페이지 접속 \rightarrow ② '사업신청' 메뉴 선택 \rightarrow ③ **스타트업 파트너 연계 육성 '**신청하기' 선택 \rightarrow ④ 기본정보 입력(특수문자 입력 시 제출 불가) \rightarrow ⑤ **신청서 업로드(용량제한 30MB 유의, 파일형식 PDF)**

 \rightarrow ⑥ '온라인 접수' 제출 \rightarrow ⑦ '신청·접수확인' 메뉴 선택 \rightarrow ⑧ 신청정보 (신청사업명, 이름, 휴대전화, 비밀번호) 입력 \rightarrow ⑨ '접수현황확인'

〈스타트업 준비 및 제출서류 목록〉

| 구분 | | 제출서류 | 필수여부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---|
| 1 | ■ 신청/ | \ | 필수 | 1부 |
| 2 | ■ 사업 | 계획서 | 필수 | 1부 |
| 2 | ■ 개인 ² |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| 필수 | 1부 |
| 구분 | | 증빙서류 | 필수여부 | 비고 |
| 1 | ■대표지 | · 신분증 | 필수 | - |
| 2 | ■개인 | 사업자등록증,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 폐업증명원(폐업 이력 있을 시) | 필수 | |
| 2 | ■법인 |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 폐업증명원(폐업 이력 있을 시) | ет | - |
| 3 | ■ 국세 |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| 필수 | - |
| 4 | ■ 재무 | 데표 및 손익계산서 | 필수 | 2021년도 |
| 5 | ■ 실적 | 자료(매출, 수출, 투자, 고용 등) | 선택 | 해당자 |
| 6 | ■ 기타 | 자료(지식재산권, 벤처기업확인서 등) | 선택 | 해당자 |

Ⅴ 심사 및 추진일정

□ 심사방법 및 절차

< 심사 및 일정 >

| ① 요건검토 | ② 심사운영 | | ③ 선정안내 | | ④ 지원금 활용 계획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업력, 업종 등 지원자격 요건 충족여부 검토 | 서류평가 파트너 매칭 현장점검 발표평가 | → | 지원대상자 및 후보자 선정 | → | 지원금 활용 계획 제출 |
| 센터 | 심사위원회 및 센터 | | 센터 | | 선정기업 |

- ① (요건검토) 신청자의 신청 자격검토 과정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
- ② (심사운영)
 - 서류평가 : 사업계획 적정성, 파급성, 중복지원 등 검토
 - 파트너 매칭 : 서류평가 통과한 파트너 프로젝트 분야 매칭
 - 현장점검 : 스타트업 파트너사 기업 간 현장 점검으로 적합 여부 판단
 - 발표평가 : 기업(파트너) 역량 및 사업화 심층평가
- ③ (선정안내) 지원대상자 및 후보자 선정, 사업화지원금 최종 확정 안내
- ④ (지원금 활용 계획) 확정 지원금 활용 계획 작성 및 제출

□ 추진일정

| 파트너사 접수 | | 파트너사 서류 심사 | | 파트너사 선정 발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23. 3. 14. ~ 3. 28. | → | 2023. 3. 30. | → | 2023. 3. 31. |
| 센터 온라인 신청 페이지* | | 심사위원회 | | 센터 홈페이지 |
| * <u>http://event.jbci.or.kr</u> | | | | • |
| 파트너 매칭 | | 창업기업 서류 심사 | | 창업기업 접수 |
| 2023. 4. 27. ~ 5. 4. | ← | 2023. 4. 26. | ← | 2023. 3. 31. ~ 4. 14. |
| 창업기업↔파트너사 | | 심사위원회 | | 센터 온라인 신청 페이지* |
| • | | | | * <u>http://event.jbci.or.kr</u> |
| 현장점검 | | 발표심사 | | 최종선정 |
| 2023. 5. 8. ~ 5. 9. | → | 2023. 5. 16. | → | 2023. 5. 17. |
| 심사위원회 | | 심사위원회 | | 센터 홈페이지 |

※ 추진일정은 내·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Ⅵ 유의사항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어 서류접수 시 마감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
- 장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
 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비 환수・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
□ 선정자의 의무

-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선정자가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. 끝.

참고 1 제출서류 발급

| 분류 | 제출서류명(사본 가능) | 발급처 | |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필수서류 |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|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| | |
| | ⑤-1 국세 완납증명서 (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 |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| | |
| 로T시ㅠ | ⑤-2 지방세 완납증명서 (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 |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(https://www.gov.kr) | | |
| | ⑤ 법인등기부등본(법인만 해당) (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 | 등기소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| | |
| 선택서류 | 용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(직원이 신청하는 경우)* 대표자 직접 신청시 생략 가능 |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(www.4insure.or.kr) | | |

참고 2

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

□ 창업여부 기준

| 창업이력 | 신청기업 구분 (판단기준) | 상세 구분 | | | | | 창업여부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|--|
| 상속/증여 | 개인 / 법인 | 기존의 개인사업자 유지 | 동종유지 | | | 불인정 | | |
| | | 또는 폐업 여부 무관 | 이종창업 | | | 창 | 업 | |
| | 개인기업 |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| | | | 불인정 | | |
| 창업이력 있음 | |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| 이종창업 | | | 창 | 업 | |
| | | | 동종창업 | 폐업 3년 초과 | | 창 | 업 | |
| | | | | 부도/파산 2년 초과 | | 창 | 업 | |
| | |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| | | | 창 | 업 | |
| | |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| | | | | 업 | |
| | 법인기업 |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| 이종창업 | | | 창 | 업 | |
| | | | 동종창업 | 동일인인 경우 | | 불인정 | | |
| | | | | 동일인이 아닌 경우 | | 창 | 업 | |
| | |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| 법인전환 기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| | 창 | 업 | | |
| | | | 이종창업 | | | 창 | 업 | |
| | | | 동종창업 | 동일인인 경우 | 폐업 3년 초과 | 창 | 업 | |
| | | | | | 부도/파산 2년 초과 | 창 | 업 | |
| | | | | 동일 | 인이 아닌 경우 | 창 | 업 | |
| | | 기조 베이지어지 오지 | 자회사 해당 | | 불입 | 인정 | | |
| | |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| 자회사 해당되지 않음 | | | 창 | 업 | |
| | |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| | | | 창 | 업 | |

- 1."기존 사업을 폐지하고"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
- 2.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(5자리)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%를 넘는 경우
- 3."동일인"이란,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함
 - 가. 법안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(출자지분 포함) 총수의 30% 이상을 소유한 경우
 - 나.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
- 4."친족"이란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 포함),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
- 5."자회사"란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말함. 이 경우, 소유비율은 법인과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
- 6. 중소기업 폐업이후 3년 이후의 동종 업종 개시는 창업 인정(부도·파산 2년)
- 7. 창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

참고 3 지원제외 대상 업종

| 구분 | 대상 업종 | 코드번호 세세분류 | |
|----|---|--------------|--|
| 1 | 금융 및 보험업 | K64~66 | |
| 2 | 부동산업 | L68 | |
| 3 | 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 | 155~56 | |
| 4 | 무도장 운영업 | 91291 | |
| 5 |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| 9112 | |
| 6 |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| 9124 | |
| 6 | 기타 개인 서비스업 | 96 | |

^{*}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